

정 관

2026 1. 14.



前 文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라 말하며,
영문으로는 SK ecoplant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축 및 토목공사업
2. 전기공사업
3. 건설군납업
4. 수출입업
5. 건축자재 판매업
6. 기계제작업(원동기, 계량기, 의료기, 연료사용기 제외)
7. 용역군납업(영선업·난방관리업)
8.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전대업
9. 건축자재 제조업
10. 공장건설, 주택건설
11. 방지시설업(대기, 폐수, 소음·진동)
12. 철강재 설치공사업
13.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및 공사업
14. 정보통신공사업
15. 산업설비용역업(산업공장, 종합환경)
16. 건설기계대여업
17. 공유수면 매립업
18. 항만준설공사업
19. 특정열 사용기자재 시공업
20. 가스시설 시공업
21. 관광숙박업(회원제 숙박설비 운영업 포함)
22. 쓰레기처리시설 설계시공업
23. 부동산 개발업
24. 오락서비스업(운동설비 운영업)

25. 전문기술용역업(건설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산림분야)
26. 토목시설 감리 전문업
27. 시설 운영사업
28.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설계·시공업
29. 건축자재 도·소매업
30. 시설물 유지 관리업
31. 부동산 분양 대행업
32. 정밀안전 진단업
33.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34. 사무용 기계장비 도매업
35. 통신장비 도매업
36.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기자재 도매업
3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38.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39.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40.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및 종합감리업
41. 조경공사업
42. 산림업 및 동 생산물 판매업
43. 농산물 및 동 생산물 판매업
44. 관상수 생산 및 판매업
45. 종합휴양지 개발 운영 및 임대업
46. 스포츠시설의 운영 및 임대업
47. 수목피해진단 처방 및 치유사업
48. 임도의 설치 및 산림형질변경 복구사업
49. 영림계획(산림조사 포함) 작성업
50.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1.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사업
52. 토양정화업
53. 해외건설업
54. 해외공사 수주 및 개발업
55. 지하수정화업
56. 주한외국군 건설군납업

57. 통신장비 임대업
58. 축산업
59. 의료업
60. 신재생에너지사업
61. 종자 및 묘목 생산업
62. 임업용 종묘 생산업
63. 기타 비알콜성음료 제조업
64. 화장품제조업
65. 완제 의약품 제조업
6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67. 발전업
68.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69. 상품 종합 도매업
70.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
71. 위치기반서비스업
72. 직업정보제공사업
7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74. 공공 및 민간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사업,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75. 공장폐수 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사업
76. 폐기물 수거, 분류, 소각 및 매립사업
77. 탄소의 포집, 저장 및 이용사업
78. 엔지니어링사업
79. 자원의 재활용 및 재활용을 통해 회수된 자원의 매매업
80. 환경관련 사업
81. 정보서비스업
82. 콘텐츠 제작, 유통, 이용 및 관련 부대사업
83.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 생산, 판매, 유통, 컨설팅, 교육, 수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소재, 기기설비의 제공
84. 정보통신사업 및 뉴미디어사업과 관련된 연구, 기술개발, 수출, 수입, 제조, 유통사업
85.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 86.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
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 87.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88.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
- 89. 지능형 전력망 사업
- 90. 시설대여업
- 91. 기계·장비 제조업 및 임대업
- 92. 연구개발업
- 93. 산업용 가스 제조업
- 9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95.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2 조의 2 【경영철학의 실행】

- ① 회사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② SKMS 의 정립, 수정 및 보완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 ③ 회사는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해 ‘SK’ 상호 및 이를 기반으로 하
는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명칭, 상징 기타 Brand (SK Brand) 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제 2 조의 3 【지배구조현장】

회사는 경영 선진화를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하며, 회사의
의지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현장” 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kecoplan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육천만주(160,000,000)로 하며, 이 중 일억이천만(120,000,000)주는 보통주식으로 사천만(40,000,000)주는 제 7 조의 2 에 정한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③ (삭제, 2021.3.26.)

제 7 조의 2 【우선주식】

- ① (삭제, 2022.3.25)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④ 어느 사업년도에 우선주식에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이 전액 지급된 후에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율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은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에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우선주식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제 7 조의 3 【전환우선주식】

- ① 회사는 제 7 조의 2 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 “회사전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이하 “주주전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관련하여, 회사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 방법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일 이상 3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주주전환주식은 전항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 조의 4 【상환우선주식】

- ① 회사는 제 7 조의 2 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회사상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상환주식(이하 “주주상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

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3. 회사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 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주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가한 금액 중에서 주주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 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 7 조의 3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7 조의 5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삭제(2021.3.26.)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③ 삭제(2021.3.26.)

제 8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집의 경우 또는 「우리사주 조합원」 신주를 배정하고자 할 때
 - 2.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기타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8.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상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이윤 극대화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 년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3.26.)
-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의 3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9 조 【시가발행】

- ①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 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하며, 납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이사회에 결의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및 인감신고】 삭제 (2021.3.26)

제 12 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준일】

- ① 삭제(2021.3.26.)
- ②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영업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영업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3.26.)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①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총회의 소집】

-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 개월 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 14 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주주에게 발송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식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 특별 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0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제 30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2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3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그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주주 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결방법】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와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26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와 이사회

제 27 조 【이사수와 선임방법】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 자격요건, 선임방법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가 제 4 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 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9 조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보결 선임한다. 다만,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0 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1 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회사를 대표한다.
- ② 이사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지배구조헌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 【이사의 직무】 (삭제, 2021.3.26.)

제 31 조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 배 (사외이사의 경우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를 주재할 의장을 선임한다.

제 32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3. 각종 전문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2 조의 3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 정관 및 경영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회일 7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단, 상법 제 397 조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5 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36 조 【보 수】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 37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3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38 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9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0 조 【사업년도】

이 회사는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의 6 주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3 호에 해당하는 연결재무제표
- ② 감사위원회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 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1 항 내지 4 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

제 42 조 【손익계산과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총수익에서 총손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순이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제 7 조의 2 에 따른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배당금
4. 제 7 조의 3 에 따른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기금
5.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금
6. 임의 적립금
7. 임의 상여금
8.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9.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

제 43 조 【주식의 소각】 削除 (2012.3.23)

제 44 조 【배당금의 지급】

- ① 배당금은 매결산기 최종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④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배당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44 조의 2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7 월 1 일 0 시 현재의 주주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제 44 조 제 4 항은 중간배당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8 장 기 타

제 45 조 【규정 등의 제정】

이 회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제규정과 규칙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 45 조의 2 【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46 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칙(2008. 5. 16.)

(시행일) 이 정관은 2008 년 5 월 1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09. 3. 13.)

(시행일) 이 정관은 2009 년 3 월 13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0. 3. 12.)

(시행일) 이 정관은 2010 년 3 월 1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 4 조 개정내용은 2010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1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3 월 1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1. 11. 1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11 월 1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2. 3.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3 월 23 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 8 조 및 제 14 조, 제 31 조의 2, 제 34 조, 제 38 조의 2, 제 41 조, 제 43 조, 제 44 조는 2012 년 4 월 1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3. 3.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3 년 3 월 2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4. 3.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2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7.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년 3 월 24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9. 3.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 7 조의 5, 제 11 조, 제 12 조, 제 15 조의 2 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는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20 년 3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 45 조의 2 의 개정내용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1. 5.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5 월 2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2.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3 월 2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2. 12.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12 월 2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 27 조 제 4 항 내지 제 6 항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 3.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25 년 3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6. 1. 14.)

(시행일) 이 정관은 2026 년 1 월 14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